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03월 28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10.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생략> 1.~3. <생략> 4. 가입자가 <u><신설></u>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6. <생략> ②~③ <생략></p> <p>제4조~제7조 <생략>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⑧ <생략> <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좌동>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10. <좌동> <u>11.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이란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손님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투자일임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u></p> <p>② <좌동></p> <p>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좌동> 1.~3. <좌동> 4. 가입자(<u>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사업자를 포함합니다</u>)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6. <좌동> ②~③ <좌동></p> <p>제4~제7조 <좌동>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⑧ <좌동> <u>⑨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u></p>	<p>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정의</p> <p>운용관리 업무에 '투자일임사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 전달' 추가</p> <p>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로 <신설>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p> <p>제10조~제3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p> <p>제 2 조~제 3 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2조 <생략></p> <p>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p>	<p><u>경우 투자일임의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가입자에게 적용될 퇴직연금의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u></p> <p>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가입자(<u>가입자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사업자를 포함합니다</u>)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p> <p>제10조~제31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u>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 명칭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별지1]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 1의3, 3의2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u></p> <p>제 2 조~제 3 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2조 <좌동></p> <p>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p>	<p>도입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 추가</p> <p>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업무에 '투자일임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운용지시' 추가</p> <p>개정일 명시</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1.~1의2. <생략> 1의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손익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은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p> <p><신설></p> <p>2. <생략> 3. 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 <신설>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뉜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p>	<p>1.~1의2. <좌동> 1의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손익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은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p> <p>1의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30%의 할인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로보어드바이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2. <좌동> 3. 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 제1의4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뉜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p>	<p>디폴트옵션 상품명 변경 반영</p> <p>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의 적용 수수료율 별도 마련</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료를 적용합니다.</p> <p>3의2. 제1의3호에 적용하는 운용손익수수료율은 가목의 기본수수료와 나목의 손익수수료로 나누어 산정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산정된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라 합니다.)이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확정된 다목의 기준지표를 상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은 경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p> <p>가.~나. <생략></p> <p>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p> <p>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비중)</p> <p>(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의미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산정하여 익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2)~(4) <생략></p> <p>라. <생략></p> <p><표 생략></p> <p>4.~10. <생략></p>	<p>료를 적용합니다.</p> <p>3의2. 제1의3호에 적용하는 운용손익수수료율은 가목의 기본수수료와 나목의 손익수수료로 나누어 산정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산정된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라 합니다.)이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확정된 다목의 기준지표를 상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은 경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p> <p>가.~나. <좌동></p> <p>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p> <p>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식 비중)</p> <p>(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의미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산정하여 익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2)~(4) <좌동></p> <p>라. <좌동></p> <p><표 생략></p> <p>4.~10. <좌동></p>	<p>디폴트옵션 상품명 변경 반영</p> <p>디폴트옵션 상품명 변경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② <생략></p> <p>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13. <생략></p> <p><u>14.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u></p> <p><u>15.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u></p> <p><u>16.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u></p> <p><u>17.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u></p> <p>② <생략></p> <p>제5조 <생략></p>	<p>② <좌동></p> <p>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13. <좌동></p> <p><u>14.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일임재산</u></p> <p><u>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u></p> <p><u>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u></p> <p><u>17.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u></p> <p><u>18. 제14호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복수로 운용중인 경우 이들간의 매도순서는 사전에 지정된 투자일임 매도순서에 따르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매도통지에 따라 일임재산으로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합니다.</u></p> <p><u>19.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u></p> <p>② <좌동></p> <p>제5조 <좌동></p>	<p>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투 자일임계약으 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의 매각 순서 명 시</p>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5년 03월 28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조~제6조 <생략>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생략> ② 가입자는 <신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⑤<생략></p> <p>제8조~제3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경과조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조~제6조 <좌동>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좌동> ② 가입자 <u>또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투자일임사업자가</u>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은행은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⑤ <좌동></p> <p>제8조~제3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5년 3월 28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경과조치)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 방법 반영</p> <p>개정일 명시</p>